

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과)

제정 2025. 8. 8 규칙 제79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말”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하며, “주중”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.
2. “하절기”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하며, “동절기”란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휴무일 등) ① 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(이하 “공원”이라 한다)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.

1. 매주 화요일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무일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그 전날
2. 주말
3. 성수기

③ 공원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숙박시설의 입·퇴실 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.

1. 하절기: 09:30 ~ 18:30
2. 동절기: 09:30 ~ 17:00

제4조(대관신청 등)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.

제5조(숙박시설 이용 등)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.

제6조(예비객실의 운영 등)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비객실의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예비객실을 지정·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·남용 및 부당 예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숙박시설 입·퇴실 시간

(제3조 관련)

시설명	입실	퇴실(익일)	비고
숲체험촌	15:00	11:00	객실 열쇠 수령 및 반납 기준
쌀체험촌	15:00	11:00	
이동식 캐빈하우스	15:00	11:00	
야영장	14:00	12:00	
※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사용료 징수 - 3시간 이하 지체 : 시설별 사용료의 30% - 3시간 초과 지체 : 시설별 사용료의 100% - 3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시간 미만은 3시간으로 간주			

[별표 2]

대관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 반환기준

(제4조 및 제5조 관련)

○ 대관시설

구 분	1개월 전	7일 전	6일 전 ~ 당일취소
주중	100%	90%	80%
주말	100%	90%	80%

※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 2의 36. 연희시설 운영업 준용

○ 숙박시설

- 성수기

구 분	10일 전	7일 전	5일 전	3일 전	1일 전	당일취소	미통보취소
주중	100%	90%	70%	50%	20%	20%	20%
주말	100%	80%	60%	40%	10%	10%	10%

- 비수기

구 분	2~6일 전	1일 전	당일취소	미통보 취소
주중	100%	90%	80%	80%
주말	100%	80%	70%	70%

※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별표 2의 26. 숙박업 준용

[별지 제2호서식]

대관료 반환 신청서

☐ 대관 접수현황

단 체 명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 표 자		연 락 처	
주 소			
대관시설		대관신청일시	
대관기간			
반환 신청 사유			

☐ 반환방법 : 계좌이체

은 행 명		예금주	
계좌번호			

※ 신청인과 상이할 경우 대관료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붙임 통장사본 1부

이천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

연번	일시	객실명	사 용 자	연 락 처	사 유	결	재
						담당	팀장